

청주지방법원 2016. 1. 13 선고 2014가단157784 판결 [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16. 10. 13 선고 2016나10804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16. 1. 13 선고 2014가단157784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12. 9.

판결 선고 2016. 1. 13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,592,770원과 그 중 38,200,000원에 대하여 2010. 7. 1.부터 2014. 10. 2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47,592,770원과 그 중 38,200,000원에 대하여 2010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0. 4. 14. 피고에게 그 소유의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, D 쏘나타승용차 등 8대의 자동차(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고 통칭한다)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10. 6. 30.까지 50,000,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며,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범칙금 및세금은 이를 피고가 부담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(이하 '이 사건 양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.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과태료로 4,571,940원을 납부하였고, 현재 미납 과태료가 3,732,960원이 남아 있다. 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,087,87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.

다. 한편,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양도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0. 10. 28. 3,800,000원, 2011. 6. 22. 8,000,000원의 합계 11,800,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.

【인정근거】갑 제3호증, 갑 제7호증의 1, 갑 제11 내지 20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차량 양도대금잔액 및 그 차량들에 부과된 과태료와 세금의 합계 47,592,770원(= 50,000,000원 - 11,800,000원 + 4,571,940원 +

3,732,960원 + 1,087,870원)과 이에 대하여 그 중 차량양도대금 잔액 38,200,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. 10. 2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는 같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 및 판단

(1)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1,800,000원을 넘어 계약금으로 18,000,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지만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(2) 피고는,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 하더라도,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과 동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.

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렌트카인 사실, 피고는 이 사건양도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, 원고가 피고와 사이 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피고 앞으로 영업용 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다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지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피고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피고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,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인수할 제3자를 지정하거나 자신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할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.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전등록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3호, 제13조 제3항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 제2호, 제84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 2,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차령 만료일이 정해져 있고, 차량 만료일

이후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, 봉인등을 반납하고 시·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차령 만료일이후에는 더 이상 그 차량을 이용하여 대여 업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, 갑 제8 내지 10, 22 내지 2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차량의 차령 만료일이 모두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소멸하였다할 것이고,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차령이 만료될 때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제3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,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피고의 의무와 동시에 이행하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현우